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회)	

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재정경제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중점 지원분야 중 하나인 문화 분야 사업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함.

3. 주요내용

가.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5조제3항부터 제6항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 규정을 마련함.

나.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점분야 중 하나인 문화 분야 사업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해 제5조제1항에 제3의2호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중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문화체육관광부장관

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사전 검토를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④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다.
- ⑤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의 사전 협의·조정 및 부처간 실무 협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0조 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3의2. 문화체육관광부장관</u>
4. ~ 13. (생 략)	4. ~ 1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③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사전 검토를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
	<u>④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다.</u>
	<u>⑤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의 사전 협의·조정 및 부처간 실무 협의 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 다.</u>
	<u>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 제부 장관이 정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- 소속기관 - 개발전략과	
연 락 처	(044) 215 - 8778